현송세무회계 · 부모님·조부모님께 결혼자금 받을 때

부모님·조부모님 결혼자금 증여 체크리스트

부모님, 친할머니, 외할머니에게 따로 받아도
공제 한도는 **한 사람 몫**으로 함께 씁니다.

공제 한도를 함께 쓰는 사람

받는 사람(나) 기준 · 친가·외가 구분 없이 모두 직계존속

부모님 + 친조부모님 + 외조부모님
한 묶음 ·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을 때
1억 5천
5천만 + 혼인 1억

같은 묶음, 결혼과 상관없는 평소 증여
성년 기준 · 10년 동안 합쳐서
5천만

새어머니 · 새아버지
부모님과 법률혼이면 같은 묶음 (사실혼 제외)
묶음 포함

시부모님 · 장인·장모님
배우자의 부모 = 인척 → 혼인 공제 없음
1천만

그래서, 따로 받아도 한도는 하나

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 · 최근 10년 안에 받은 돈 없을 때

부모님 **1억** + 친할머니 **3천만** + 외할머니 **2천만** = 한도 안 **1억 5천**

친가·외가에서 **각각 1억 5천**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부모님께 먼저 받아 한도를 다 썼다면, 조부모님 돈은 **공제 없이** 세금을 계산합니다.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·제53조의2, 민법 제768조 (상증법 2025. 10. 1. 시행)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계산해 보면

할머니가 주신 5천만 원, 부모님께 얼마 받았느냐에 따라

A · 부모님께 1억 5천을 먼저 받은 뒤

할머니가 손주에게 5천만 원

증여받은 금액	5천만 원
남은 공제 (부모님 돈으로 다 씀)	0원
세율 10% (과세표준 1억 이하)	500만 원
세대생략 할증 30%	+ 150만 원
기한 안 신고 시 세액공제 3%	– 19만 5천 원
내야 할 증여세	**약 630만 원**

B · 합쳐서 1억 5천 안이라면

부모님 1억 + 할머니 5천만 원

증여받은 금액 (합계)	1억 5천만 원
공제 (기본 5천만 + 혼인 1억)	– 1억 5천만 원
과세표준	0원
내야 할 증여세	**0원**

할증 30%는 **공제 후 계산된 세금**에 붙습니다. 세금이 0원이면 할증도 없습니다.
증여세 세율: 과세표준 1억 이하 10% · 5억 이하 20% · 10억 이하 30% · 30억 이하 40% · 30억 초과 50% (누진).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예시는 모두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,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, 손주의 부모님 생존,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. 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·제53조·제53조의2·제56조·제57조·제69조.

받기 전에 꼭 알아둘 것

친가·외가는 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

친조부모님, 외조부모님,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입니다. 기본공제 5천만 원(10년)과 혼인공제 1억 원을 **모두 합쳐서 한 번** 씁니다.

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직접 주면 할증 30%

공제를 넘어 세금이 생기면 산출세액에 **30%가 더 붙습니다.**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%입니다. 손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할증이 없습니다.

기준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

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**신고일 앞뒤 각 2년** 안에 받아야 혼인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

아이를 낳으면 출생일부터 2년 안에도 1억 공제가 있지만, 결혼 때 받은 공제와 **합쳐 1억이 한도**입니다.

시부모님·장인장모님 돈은 1천만 원

배우자의 부모님은 인척이라 공제가 1천만 원이고, **혼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**

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

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**세액의 3%를 공제**받습니다. 가족 간이라도 **계좌이체로 주고받아**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세요.

현송세무회계
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
02-562-0111
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·제4호, 제53조의2 제1항~제3항, 제57조, 제68조, 제69조, 민법 제768조 (상증법 2025. 10. 1. 시행).

증여 전 마지막 점검

우리 집 상황 체크해 보세요

하나라도 **"모르겠다"**면, 돈을 옮기기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쌉니다.

- [] **부모님·친가·외가 조부모님께 받은 돈을 모두 더해 봤나요?**
 한 묶음으로 합쳐서 공제 한도를 따짐
- [] **그 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넘나요?**
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 기준 · 넘는 만큼 과세
- [] **최근 10년 안에 부모님·조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나요?**
 있다면 그만큼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줄어듦
- [] **조부모님 돈을 손주가 직접 받나요?**
 세금이 생기면 30% 할증
- [] **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나요?**
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
- [] **출산 공제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가요?**
 결혼·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
- [] **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나요?**
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→ 세액 3% 공제

애매한 항목이 있다면

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알려주시면, 공제가 얼마 남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
프로필 링크 → 홈페이지 상담 신청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(2025. 10. 1. 시행) 기준 일반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